

# 대 구 고 등 법 원

## 제 3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1나483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대표이사 000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000

                                  3. 주식회사 C  
                                  대표이사 000

                                  4. D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소관 : 00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000, 000

                                  2. E

                                  3. F

                                  4. 주식회사 G  
                                  대표이사 000

5. H

6. I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7. 주식회사 J

대표이사 000

피고, 피항소인

8. K

9. L

10. 주식회사 M

대표이사 000

11. N

12. O

13. P

14. Q

피고 8.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000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09가합1431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3. 2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경상북도 □□군이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2009년 금제1504호로 공탁한

902,424,180원 중 165,08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A에, 33,484,3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B에, 350,414,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C에, 188,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D 주식회사에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R은 2007. 5. 23.경 경상북도 □□군으로부터 □□군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92,462,910원, 공사기간 2007. 5. 23.부터 2008. 9. 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R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는 2007. 9. 17. 공사대금 3억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석공사는 2008. 7. 10. 공사대금 63,484,300원으로 정하여 원고 주식회사 B에, 창호·유리·금속공사는 2008. 7. 11. 공사대금 480,414,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주식회사 C에, 목공사·수장공사·금속공사는 2008. 8. 1. 공사대금 2억 1,3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 D 주식회사에 각 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들과 주식회사 R, □□군은 위 각 하도급 직후인 2008. 7. 15.부터 2008. 8.

29.까지 사이에 위 각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군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마다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갑 제2, 3호증의 각 1, 제4, 5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08. 9. 26. 준공되었고, 위 준공 이전에 주식회사 R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7,850만 원만 지급하였는데, □□군은 2008. 9. 12. 위 직불합의서에 따른 직불 하도급대금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 141,412,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3,0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C에 1억 3,000만 원, 원고 D 주식회사에 2,5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후,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2009년 금제1504호[· 피공탁자 - 원고들, 주식회사 R 및 피고 대한민국 ; · 공탁원인 - 피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포함,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등과 관련된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 ; · 법령조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잔대금 902,424,18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신축공사의 준공일인 2008. 9. 26.까지 그 공사대금에 관하여 □□군에 통지되거나 송달된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 금액은 합계 51,508,995원(피고 대한민국 8,292,560원, S 23,216,435원, T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선행채권'이라 한다)이다.

바.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주식회사 R의 채권자들로서 주식회사 R의 □□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위 피고들의 가압류결정 및 압류결정은 모두 2008. 10. 1. 이후에 □□군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U, V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들

(1)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 작성 당시에 □□군의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의무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R의 □□군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들의 각 하도급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은 원고들에게 모두 양도되었으므로, 그 후에 채권양수하거나 채권가압류를 한 피고들보다 원고들의 직불청구권이 우선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2008. 9. 26. 후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채권자들보다는 원고들의 직불청구권이 우선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들의 미수령 하도급 공사대금 상당액(원고 주식회사 A : 165,088,000원, 원고 주식회사 B : 33,484,300원, 원고 주식회사 C : 350,414,000원, 원고 D 주식회사 : 188,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 나. 피고들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의 효력은 당시 기성금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만 생기고, 위 직불합의로써 주식회사 R의 공사대금채권이 원고들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래 발생하는 공사대금에 관하여도 위 직불합의의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수급사업자의 공사시행으로 기성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사대금에 관한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주식회사 R, □□군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이 시공하는 공사대금 상당액은 주식회사 R을 거칠 필요 없이 원고들에게 직불하도록 약정한 사실, □□군이 주식회사 R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공탁한 금액은 902,424,180원인데, 그 중 위 준공일까지 채권양도되거나 채권가압류 통지된 이 사건 선행채권은 합계 51,508,995원에 불과하고,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합계 736,986,300원[원고 주식회사 A 165,088,000원(385,000,000원 - 78,500,000원 - 141,412,000원) + 원고 주식회사 B 33,484,300원(63,484,300원 - 30,000,000원) + 원고 주식회사 C 350,414,000

원(480,414,000원 - 130,000,000원) + 원고 D 주식회사 188,000,000원(213,000,000원 - 2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축공사가 2008. 9. 26. 준공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원고들의 하수급 부분 공사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군은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R, 수급사업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별도 직불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시점(최종적으로 2008. 9. 26. 이전)에 원고들에게 그 각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군의 주식회사 R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공사대금채권 합계 736,986,300원과 피고 대한민국이 양수한 채권을 포함하여 그 소멸 전에 채권양도 또는 채권가압류 등이 통지된 이 사건 선행채권 합계 51,508,995원을 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탁 금액 902,424,180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여 양 채권은 서로 경합하지 않고, 2008. 9. 26. 후에 통지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및 압류결정 중 원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 내의 금액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 및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들의 각 공사잔대금 상당액(원고 주식회사 A 165,088,000원, 원고 주식회사 B 33,484,300원, 원고 주식회사 C 350,414,000원, 원고 D 주식회사 188,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각 해당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

## 선 정 자 목 록

1. 주식회사 J
2. W 주식회사
3. X
4. Y
5. 주식회사 Z
6. a
7. b
8. c
9. 주식회사 d
10. 주식회사 e
11. f 주식회사 (끝)